

#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 목 차



|                                           |           |
|-------------------------------------------|-----------|
| <b>I. 법령 제정·개정 동향</b>                     | <b>1</b>  |
| 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 2         |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2         |
| 3. 국토기본법 (개정).....                        | 6         |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 7         |
|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9         |
| 6. 체육인 복지법 (제정).....                      | 10        |
| 7. 공직선거법 (개정).....                        | 11        |
|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2        |
| <b>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b>                 | <b>13</b> |
| 1.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14        |
| 2.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
| 3.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 15        |
| <b>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b>            | <b>16</b> |

I

#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

1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2. 8. 1. 시행 `22. 8. 1.]

소관부서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23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장관이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바, 시·도 교육감이 예산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의 기준경비 통보 시기를 8월 31일까지로 한 달 앞당기려는 것임.

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2. 2. 3. 시행 `22. 8. 4.]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책과), 044-203-4203

### ■ 제정이유

-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중국도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있음.
- 국내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

라.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11조).

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제16 조에서 제18조까지).

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이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및 제34조).

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파.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하여 공동기술

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 국토기본법

### 3 [일부개정 `22. 2. 3. 시행 `22. 8. 4.]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산업·교육·일자리·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2. 2. 3. 시행 `22. 8. 4.]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 ■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나,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 효력 상실 등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제22조제2항 신설).
-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 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추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체육인 복지법

6 [제정 `21. 8. 10. 시행 `22. 8. 11.]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5

### 제정이유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 ·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제정안의 국가유공자와 유 · 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질병,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 마.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창업준비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바.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사.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 공직선거법

### 7 [일부개정 `22. 2. 16. 시행 `22. 8. 17.]

소관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방역 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되,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8. 9. 시행 `22. 8. 9.]

소관부서 :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9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해당 법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Ⅱ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

##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의결일 `22. 7. 20.]

###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정함 (안 제3조)

2

##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결일 `22. 7. 18.]

### 제정이유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기본이념과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제4조)
- 나.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제10조)
- 다.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제12조)
- 라.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안 제13조~제20조)

3

##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의결일 `22. 7. 29.]

## ■ 제정이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나.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정함 (안 제4조~제5조)
- 다.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 라. 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제9조)



##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의견22-0211] 경상남도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의 근거는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위임 규정을 근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는지?

###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맡기고, 위임을 받은 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의 법적 효과는 수임자에게 귀속됩니다.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권한의 위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조례·규칙에서 정함이 원칙이고, 개별법 규정에 권한의 위임 허용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살피건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이나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지원(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제9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제16조) 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부산물법에 규정된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익산시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의2 관련]

[의견22-0205] 전라북도 익산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137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이하 “익산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조의2제1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6호)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익산시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익산시에서 조례로 정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의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익산시조례안 제19조의2제3항의 의미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적용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부 기준을 적용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농촌태양광사업과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하 “허가권자“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관련)

[의견22-0193] 경상남도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에 따라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3조 별표 1 라에서 출구 및 입구(이하 “출입구”라 한다)는 전시설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상 사업장에서 자동차의 매매나 매매알선이 사업장 주변의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제1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주석 2에서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로서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로 다른 필지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전시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출입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필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3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진 수개의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12m 도로에 붙어 있는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바, 이는 여러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구역에 하나의 출입구만 있어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이 2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경우로서 출입구가 있는 1필지는 12m 도로에 붙어 있고 나머지 1필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교통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출입구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